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34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김예지

고동진 · 김상훈 · 김용태

주호영 · 조정훈 · 서천호

박수민 · 안상훈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 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라 한다)에게서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때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가 제4조제1항에따른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청 체 | عال کا <u>۱</u> ۵ |
|---------------------|---------------------|
| 현 행 | 개 정 안 |
|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
| 개정법률 | 개정법률 |
| <u><신 설></u> | 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의 제한) |
| |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
| |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 |
| | 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
| |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 |
| | 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제 |
| | 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 |
| | 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
| | 자(이하 이 조에서 "관광객이 |
| | 용시설업경영자"라 한다)에게 |
| | 서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 |
| |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 |
| | 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 |
| | 라 한다)를 할 때 관광객이용 |
| | 시설업경영자가 제4조제1항에 |
| | |
| | 따른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 |
| | 여야 한다. |
|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은 제4 |
| | 조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
| | 확인한 결과, 관광객이용시설업 |

< 신 설>

제86조(과태료) <신 설>

①· ② (생 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경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확인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2 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u>②</u>· <u>③</u>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